

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

□ 검토 배경

-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교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중이나,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^{*}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 존재
 - * TCS 국제학교, IEM 국제학교, CAS 기독방과후 학교 등
- 특히 「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」에서 집단감염 지속 발생 중으로 숙박, 식사 등과 결합하여 발생
 - * 종교관련 시설은 통성기도, 찬양 등 행위로 인해 상당한 방역적 위험성이 존재하며, 기도원·수련원 등은 현황파악 및 지자체 방역수칙 행정명령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
-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경우 운영형태, 참여인원 등이 다양하여 지자체가 학원,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방역을 관리할지 불분명
- 「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」에 대하여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

□ 방역수칙 적용방안

- 「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」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

① (대상) ¹⁾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²⁾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³⁾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⁴⁾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
* (예시) 대전시 IEM 국제학교

→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

- 수도권·비수도권 모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

<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 개요 >

1. 숙박시설 운영 금지
2.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
 - ① 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
 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,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 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, 대면수업 금지(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)
 -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 -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
 - (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)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
 - (외부 출입하는 종사자)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
 - 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
- ② (대상) ¹⁾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²⁾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³⁾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⁴⁾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
→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,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

<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>

1. 정규 종교활동(예배)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→교습·학습 등 금지
2. 식사, 숙박 금지
3. 정규 종교활동(예배)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10%(수도권), 20%(비수도권)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%(수도권), 20%(비수도권) 이내 참여 기준 준수
 -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

참고1 시설 유형별 의무화되는 방역 수칙

□ 학원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	▶ 마스크 착용
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
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
▶ 시설 내 음식 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하지 않도록 안내	▶ 시설허가면적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	▶ 관악기·노래 교습 금지 * 단, 하나의 공간(실) 내 1: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, 1~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(실) 내 4인까지 허용
▶ 21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중단	▶ 숙박시설 이용 금지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
▶ 시설허가면적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
▶ 관악기·노래 교습 금지	
* 단, 하나의 공간(실) 내 1: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, 1~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(실) 내 4인까지 허용	
▶ 숙박시설 운영 금지	
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	
① 입소자 (공동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등일 진행 - (입소前) 2주간 예방관리 권고,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	

금지·마스크 착용 권리 및 환기 강조, 충간 이동
자제, 공용 공간(사무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,
대면수업 금지(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)

-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
② 종사자 (공동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

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

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: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

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□ 종교시설(수도권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정규 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 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1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
-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
-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모두 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· 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
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
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 관리자 지정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이용자 수칙

정규 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 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1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
-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
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모두 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· 행사(숙박포함) 참석 및 식사 금지
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
마스크 착용
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

□ 종교시설(비수도권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
정규 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 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
-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
-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모두 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· 행사(숙박포함) 참석 및 식사 금지
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
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 관리자 지정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이용자 수칙

정규 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 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
-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
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모두 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· 행사(숙박포함) 참석 및 식사 금지
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
마스크 착용
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